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수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14
----------	-----

발의연월일 : 2024. 4. 4.

발의자 : 이수련, 김지훈(국), 한근수,
전혜연, 박윤옥, 한송연,
김동훈, 정현미, 원주영,
김지훈(민), 김영실, 이정애,
김상수, 손정자

1. 제안 이유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전시해설사 운용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역사·문화·예술 사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와 문화예술 소양 계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요 용어 정의(안 제2조)

- “전시해설사” 정의 추가

나. 전시해설사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시해설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

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시해설사의 모집과 운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전시해설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안내인을 말한다.</u></p>
<p>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신설></u></p> <p>7. (생략)</p>	<p>제4조(경비지원)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전시해설사의 모집과 운용</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경비지원)제7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7. 전시해설사(도슨트)의 모집과 운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사업대상 :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 도슨트(매년 7기관 7명)
- 사업내용 : 도슨트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10개월)
- 2023년부터 진행된 지원사업임

나. 추계결과

- 도슨트 인건비 : 18,000천원 × 7기관 = 126,000천원

※생활임금 상승률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126,000	128,800	131,600	134,400	137,200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도슨트 인건비)	도비	37,800	38,640	39,480	40,320	41,160
	시비	88,200	90,160	92,120	94,080	96,040

다. 재원조달방안: 도비 30%, 시비 7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국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재원 조달		126,000	128,800	131,600	134,400	137,200	658,000
의존 재원	보조금	37,800	38,640	39,480	40,320	41,160	197,400
자체 수입	지방세	88,200	90,160	92,120	94,080	96,040	460,600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